

<참 조>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결문(안)

일본의 독도 관련 트집은 마치 고질병의 재발과 같아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77년에 후쿠다 총리, 84년에 아베외무장관, 93년에 무토외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시시때때로 번갈아 가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명박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라는 국제법적 요건을 들어 독도가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자 호리가즈오 교토대 교수도 87년 발표한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메이지(明治)유신후인 1877년 3월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던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 일본의 이케다 유키히코외상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망언을 한 것은 일본 정부의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제2의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규탄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교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망언을 규탄한다.
2. 일본은 제국주의의 망상을 버리고 패권주의를 지양할 것이며 한·일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 관계의 정립을 위해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독도항만 접안 시설공사는 안전한 물자 공급과 항해 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4. 정부는 영토와 관련된 독도문제에 대해선 그 땅이 우리의 것임을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더욱 극명하게 규명하여 이를 널리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어떤 이유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를 촉구한다.

1996년 2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